##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5 발의연월일: 2024. 6. 5.

발 의 자:임이자·김태호·김형동

김위상 • 곽규택 • 김성원

김종양 · 최수진 · 권영세

박충권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·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"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"에서 "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"로 확대하려 는 것임(안 제74조제7항).

법률 제 호

##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4조제7항 본문 중 "36주"를 "32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4조(임산부의 보호) ① ~ ⑥	제74조(임산부의 보호) ① ~ ⑥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	⑦
내 또는 <u>36주</u> 이후에 있는 여	<u>32주</u>
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	
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	
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1일	
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	
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	
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	
을 허용할 수 있다.	
⑧ ~ ⑩ (생 략)	⑧ ~ ⑩ (현행과 같음)